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187
----------	-------

발의연월일 : 2025. 9. 23.

발 의 자 : 한창민 · 백선희 · 용혜인
윤종오 · 손 솔 · 김선민
전종덕 · 정춘생 · 김재원
정혜경 · 최혁진 · 김종민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금융채무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상당수는 채권금융회사등과의 정보·교섭력의 격차로 인해 적절한 채무조정 절차를 활용하지 못한 채 고강도의 추심에 노출되고 있음. 특히 채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연락, 면책결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채권추심 등은 채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2024년 1분기 말 현재 가계 및 자영업자 연체차주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이 각각 0.34억 원과 1.22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상당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채무자에 의한 추심중단 요청권, 채무자 대리인을 통한 협상 권한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채무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다

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한편 시효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일부 채무의 변제가 있던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추정, 즉 시효가 지났어도 채무자가 돈을 갚을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추정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일부의 변제 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변경됨. 그러나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채권금융회사등과의 사이에는 민사법에 대한 지식,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인지, 그 기간이 지났는지 등에 대하여 정보 불균형이 있다는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므로, 개인채무자에게 시효경과 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시효가 경과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에 대해서는 추심할 수 없도록 하며,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가이드라인 사례를 참고하여 추심연락 횟수·방법 제한을 강화하고, 미국의 공정채무추심법 사례를 참고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는 경우 채무 추심 연락을 중단하도록 함. 이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간의 공정한 채권·채무 관계를 형성함과 동시에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 적용의 기준인 고액채권의 기준을 1억원까지 상향조정하여 보호 대상을 확대함(안 제3조).
- 나. 개인금융채무자가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금융채권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 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금지함(안 제14조).
- 라. 현행 규정은 채권별로 7일에 7회 이하로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7일에 3회 초과할 수 없고, 1개월에 10회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 전화 등 다른 수단으로 연락이 안 될 때만 보충적 수단으로 채무자를 대면접촉(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심연락의 횟수·방법 제한을 강화함(안 제16조).
- 마. 개인금융채무자가 서면으로 채무 상환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추심 연락의 중지 의사를 밝힌 경우, 채권추심자는 추심을 위한 연락을 중단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3항).
- 바. 개인금융채무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채권금융회사등과 채무조정을 진행할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5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채무자대리인”이란 개인금융채무자를 대리하여 채권금융회사등과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제7조를”을 “제6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를 “개인금융채권·채무 내용의 변동 관리”로 한다.

제6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

제10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3조의3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통지한 개인금융채권

제2장에 제2절(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제13조의2(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의 관리) 채권금융회사등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에 따라 그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소멸시효 완성의 통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소멸시효 완성일을 말하며, 이하 “소멸시효완성일”이라 한다)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멸시효완성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과 관련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2. 소멸시효완성일
3.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사실
4. 그 밖에 소멸시효의 완성과 관련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의4(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그 임원·직원
이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이하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시행하
여야 한다.

②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에 관
한 사항
2. 임원·직원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3.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 조치를 위한 기준에 관한 사항
4.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5.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 사
항
6.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의 제정·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7.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소멸시효 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을 마련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
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사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개인금융채권

제16조의 제목 중 “횟수 제한”을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7회를”을 “3회를 초과하거나 1개월에 10회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는 대면 추심연락은 전화 등 다른 원격수단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개인금융채무자가 서면으로 채무 상환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추심연락의 중지 의사를 밝힌 경우, 채권추심자는 추심을 위한 연락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추심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
2. 채무추심자나 채권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송 등의 구제방법을 취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경우
3.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실제로 실행하겠다고 통지하는 경우

제4장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채무자대리인의 선임)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본인을 대리하여 채권금융회사등과 채무조정을 진행할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자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필요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조치를 한 자

제52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조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별표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필요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조치를 한 경우

13의3.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조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별표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추심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추심을 하였을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멸시효 완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멸시효완성일이 도래하는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채무자대리인”이란 <u>개인금융채무자를 대리하여 채권금융회사등과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자를 말한다.</u>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② <u>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③ <u>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6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u>1억원</u> ----- ----- ---- <u>제6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를</u> -----. <u><삭 제></u>
제2장 <u>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u>	제2장 <u>개인금융채권 · 채무 내용의 변동 관리</u>

<u><신 설></u> 제10조(양도의 제한) ① 채권금융 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개인금 융채권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 략) <u><신 설></u> ②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제1절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u> 제10조(양도의 제한)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13조의3에 따라 소멸시효 가 완성된 사실을 통지한 개 인금융채권 ② (현행과 같음) <u>제2절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관리</u> <u>제13조의2(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의 관리)</u> 채권금융회사등은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금융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의4제1항에 따 른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에 따 라 그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u>제13조의3(소멸시효 완성의 통지)</u>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 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제13조의
--	--

<신 설>

4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관리내
부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소멸
시효 완성일을 말하며, 이하
“소멸시효완성일”이라 한다)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과 관련
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금융
채권에 관한 사항
2. 소멸시효완성일
3.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
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도 된
다는 사실
4. 그 밖에 소멸시효의 완성과
관련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의4(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

-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그 임원

· 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소멸
시효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기준(이하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이라 한
다)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의 운
영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전담
인력에 관한 사항

2. 임원·직원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3.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 조
치를 위한 기준에 관한 사항

4.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금융
채권의 관리 방안에 관한 사
항

5.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의 준
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평가 사항

6.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의 제
정·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7.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에 관한 사
항

제14조(추심의 제한) 채권추심자는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제16조(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①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8.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소멸시효 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을 마련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사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추심의 제한) -----

-----.

1. ~ 3. (현행과 같음)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개인금융채권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6조(추심연락의 제한) ① -----3
-----회를 초과하거나 1개월에 10회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제18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① · ② (생략)
<신설>

---. 다만,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는 대면 추심연락은 전화 등 다른 원격수단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금융채무자가 서면으로 채무 상환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추심연락의 중지 의사를 밝힌 경우, 채권추심자는 추심을 위한 연락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추심활동을 중단하겠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
2. 채무추심자나 채권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송 등의 구제방법을 취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경우

<신 설>

제52조(과태료) ①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② (생 략)

1. ~ 5.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신 설>

3.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실제로 실행하겠다고 통지하는 경우

제40조의2(채무자대리인의 선임)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본인을 대리하여 채권금융회사등과 채무조정을 진행할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자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필요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조치를 한 자

②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

5. ~ 9. (생 략) ④ · ⑤ (생 략)	<u>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u> 5. ~ 9.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	--